

2009 NHERI 리포트 제42호 (2009. 1. 13)

작 성 : 손황제 책임연구원(6399-5939)

syjin@nonghyup.com

감 수 : 전찬익 정책연구실장(6399-5962)

cic5630@yahoo.co.kr

#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
---

## ■ 목 차 ■

---

### <요 약>

1. 금융 · 세제 .....	1
2. 농업 · 농촌 .....	9
3. 농식품유통 .....	13
4. 복지 · 기타 .....	17

---

NHERI 리포트의 全文을 인터넷([www.nheri.re.kr](http://www.nheri.re.kr)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# 목 차

## 1. 금융·세제

-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/ 1
- 증권시장 퇴출제도 선진화 도입 / 2
-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 / 3
- 코스피200지수 선물 야간시장 개설 / 3
- 코스피200지수 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/ 4
-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/ 4
- 종합소득세 인하 및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/ 5
-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/ 6
- 양도소득세 완화 / 6
- 세금우대저축 등 가입기한 연장 및 한도·대상 조정 / 8

## 2. 농업·농촌

-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/ 9
-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/ 9
-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/ 10
-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/ 11
-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/ 11
-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(SRM) 규정 신설 / 12
-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/ 12
- 관광지 조성을 위한 초지 전용시 대체조지조성비 면제 / 12

### 3. 농산물유통

-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/ 13
- 물류표준화사업 담당기관 농협으로 일원화 / 13
- 시·군 유통회사 설립·운영 지원 / 14
-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, 견본거래 허용 / 14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/ 15
-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 / 16
- 도서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에 해상화물운송료 지원 / 16

### 4. 복지·기타

-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17
-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/ 17
-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/ 18
- 기초노령연금 확대 / 18
-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/ 19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/ 19
-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완화 / 20
-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/ 20

# 1. 금융·세계

## □ 자본시장통합법 시행

###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시행('09.2월)

-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신탁업법,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이 폐지되고, 관련 조문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

### ○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적 규율체제로 전환 :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규제 적용
-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: 투자성(원본손실 가능성)있는 모든 금융상품 해당(현행 : 법령에 열거된 상품만 취급)
-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확대 : 금융상호간 겸영 허용, 부수업무 허용, 지급결제업무 허용, 투자권유 대행인을 통한 상품 판매
- 투자자 보호 강화 : 금융상품 설명의무 확대 적용, 투자자 특성 파악 의무와 투자권유 금지조항 도입

### ○ 증권유관기관의 명칭 변경

- 기존 '한국증권선물거래소'는 '한국거래소'로, '증권예탁결제원'은 '한국예탁결제원'으로 명칭 변경하며, 기존 증권업협회, 선물협회, 자산운용협회를 합한 '한국금융투자협회' 출범

## □ 증권시장 퇴출제도 선진화 도입

-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등 퇴출제도를 '09.2월부터 시행
-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강화
  - 영업활동정지, 회생절차신청기각, 공시의무위반, 기타 횡령·배임,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추가 시행
- 상장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 강화
  - 상장시가총액 요건을 시장 규모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개선
    - 유가증권 : (현행) 25억원 미만 → (개정) 50억원 미만
    - 코스닥 : (현행) 20억원 미만 → (개정) 40억원 미만
-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신설(코스닥)
  -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, 5년 연속시 퇴출
    - 상장폐지 기산시점은 소급적용하지 않고, '08년 사업연도부터 기산
- 장기·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(코스닥)
  -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경과기간(2년) 내에 15점 이상 벌점을 추가로 받는 경우
  - 관리종목 지정해제 후 3년 이내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재지정된 경우

## □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

-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 지정 후 주가가 급변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사례 빈발
  - 상장폐지 모면용 호재성 재료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한 후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실 발생
-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매매방식으로 변경('09.4월 시행)
- 매매주기는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편의성, 투자자의 친숙도, 정리매매종목의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30분 단위로 설정
- 09:00~15:00까지 13회 단일가매매 실시 후 시간외 증가매매와 시간외 단일가매매는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 실시

## □ 코스피200지수 선물 야간시장 개설

- '09.9월부터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변경 예정
-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시장 매매는 시카고상업거래소(CME)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, 청산 및 결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(KRX)가 담당
-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~오후 3시15분외에 오후 5시~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 가능

## □ 코스피200지수 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

- 국내 야간시간에 유럽선물거래소(EUREX)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·거래하고, 미결제포지션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(KRX)에서 결제('09년 말 시행 예정)
- 선물(코스피200지수 옵션)인수도의 의무가 있는 선물형태로 상장하여, EUREX의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설계
  - 형식적으로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서,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임
- 한국시간 오후 5시~익일 오전 5시(유럽 서머타임 적용시 오후 4시~오전 4시)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코스피200 지수 옵션의 야간시장을 운영하는 효과 발생
- 한국증권선물거래소(KRX) 회원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참여 가능

## □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- 금융기관은 위험성이 높은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해 직업, 거래목적, 계좌개설 목적 등 강화된 신원확인 필요('08.12월 시행)
- 금융기관이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

□ 종합소득세 인하 및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

- '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1~2%p씩 인하

<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>

과세표준	'08년	'09년	'10년
~ 1,200만원	8%	6%	6%
1,200만원 ~ 4,600만원	17%	16%	15%
4,600만원 ~ 8,800만원	26%	25%	24%
8,800만원 ~	35%	35%	33%

-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
-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인상하고,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300~900만원으로 인상
-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1,500만원으로 인상

<종합소득세 항목별 소득 공제 한도>

구 분	'08년	'09년
기본공제액	100만원	150만원
의료비	500만원	700만원
취학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	200만원	300만원
대학생 교육비	700만원	900만원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1,000만원	1,500만원

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

-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

<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>

과표기준	6억이하	12억이하	50억이하	94억이하	94억초과
세율	0.5%	0.75%	1%	1.5%	2%

-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,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(20~40%)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(10~30%) 신설
-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%에서 150%로 축소

□ 양도소득세 완화

- '09.1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

<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>

2008년		2009년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,000만원 이하	9%	1,200만원 이하	6(6)%
4,000만원 이하	18%	4,600만원 이하	16(15)%
8,000만원 이하	27%	8,800만원 이하	25(24)%
8,000만원 초과	36%	8,800만원 초과	35(33)%

\* ( )안의 수치는 2010년 과세표준별 양도소득세율임

○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

-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:  
연4%~최대80%(20년이상 보유) → 연8%~80%(10년이상 보유)
-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,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

○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인하

- 2010년까지 양도 또는 신규취득하는 주택(2년이상 보유)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
  - 2주택 : '08년 50% → '09년 6~35% → '10년 : 6~33%
  - 3주택 이상 : '08년 50% → '09년('10년) 45%
-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30%)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
  - 지방 저가주택 기준 : '08년 1억원 이하 → '09년 3억원 이하

○ 8년 이상 재혼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

- 8년 이상 재혼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,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, 5년간 3억원으로 인상
- 8년 이상 재혼자경한 농지·임야·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

## □ 세금우대저축 등 가입기한 연장 및 한도·대상 조정

- 조합 예탁금 비과세 기한연장 및 한도 증액('09.1월 시행)
  - 지역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
  - 1인당 비과세 예탁금 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
  - 조합원 출자금(1인당 1,000만원)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도 2012년까지 연장
  
- 세금우대종합저축 기한 연장 및 한도 축소('09.1월 시행)
  -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기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
  - 가입한도는 1~3천만원으로 축소
    - 20세 이상 : (현행) 2천만원 → (개정) 1천만원
    - 노인·장애인 : (현행) 6천만원 → (개정) 3천만원
  - 가입대상 중 노인의 연령기준은 현행 60세(여자 55세)이상에서 '60세 이상'으로 통일
  
- 생계형저축 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('09.1월 시행)
  - 생계형저축 가입기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며, 가입대상은 현행 60세(여자 55세)이상에서 '60세 이상'으로 통일
  - 가입한도는 현행 3천만원(원금 기준)으로 동일

## 2. 농업·농촌

### □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

- 간척지(500ha내외)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
  - 농수산물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매립지 이용 가능
- 시범사업 대상지
  - 전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(700ha)
  -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 산이 2-1공구(713ha)
- 정부지원
  - 간척지 장기 임대 및 간척지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지원
  - 기존 농림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, 펀드, 수익형민자사업(BTO), 민간자본유치사업(BTL)등 새로운 투자지원 유도

### □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

- 도시의 30~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
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,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·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,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

-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~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, 농수산물 가공·유통 종사 농업인
- 지원내용
  - 기반시설 조성비 : 보조 100%(국고 70%, 지방비 30%)
  - 임대주택 건축비 : 보조 40%, 용자 60%
  - 분양주택 건축비 : 용자 100%(연리 3%, 3년 단기상환)
  - 영농 기술 및 자금지원,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등은 기존 사업비에서 연계, 종합 지원

#### □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

- 축산발전기금 용자취급기관 확대
  - '08.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용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
-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
  - '09.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며,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추가
  -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('09.6월 시행)
    - 가축사육시설면적 : (현행) 300m<sup>2</sup> 초과 → (개정) 50m<sup>2</sup> 초과
  - 축산업 등록대상인 종축업에 종오리업 추가('09.6월 시행)
    - 종축업 : (현행) 종돈업, 종계업 → (개정) 종돈업, 종계업, 종오리업

□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

-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 개선('09.1월 시행)
  - (현행) 당초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 신청 → (개정) 모든 시·도지사
-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·변조 장치 마련 및 인터넷 발급
  - 등급판정확인서 복사시 “사본” 글씨가 표시되면서, “원본”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('09.1월 시행)
  - 축산물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 확인서 추가 발급 가능('09.1월 시행)

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

-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·보온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('09.1.1일 시행)
- 지원시설 : 다겹보온커튼, 고효율(전기·석탄·중유·목재·경유) 난방기, 순환식 수막재배시설, 자동 보온덮개 등
- 지원대상 : 10a이상 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업인·법인(단, 시설원예품질개선을 추진한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업인 제외)
- '09년 지원조건 : 국고 및 지방비 60%, 용자 20%, 자부담 20%

## 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(SRM) 규정 신설

-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수입하는 소의 조직 중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 규정 신설
  
- 특정위험물질(SRM : Specified Risk Material)
  -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(소장의 끝부분)
  -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·눈·척수·머리뼈·척추
  -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·고시하는 물질

## □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

- '09.6월 이후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

## □ 관광지 조성을 위한 초지 전용시 대체초지조성비 면제

- '09.5월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

### 3. 농식품유통

#### □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

- 쇠고기 이력추적제 :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사육·도축·가공·판매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·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
- 소의 도축, 식육포장처리,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며,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됨
  -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
- 소비자는 소의 종류, 원산지, 출생일, 사육자,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(6626+ 무선인터넷키)나 인터넷(www.mtrace.go.kr) 등을 통해 확인 가능

#### □ 물류표준화사업 담당기관 농협으로 일원화

-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물류표준화사업을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관리
- 사업신청·접수처 :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
- '09년 이후 구입하는 장비의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실시하고, '08년 이전분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관리

## □ 시·군 유통회사 설립·운영 지원

-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·전문화된 시·군 유통회사 설립·운영을 지원
- 시·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과 시·군 등이 출자하고, 전문 CEO에 의한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임
- 자격요건
  - 법인형태 : 상법상의 주식회사,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
  - 생산자(농어업인, 영농조합법인) 및 시·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/4이상 출자하고,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
  -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‘농업 CEO 인재풀’에서 선임
- 지원내용
  - 운영자금(보조 100%) : 3년간 총 20억원 이내
  - 원물확보 자금(용자 80%, 자부담 20%) : 70억원 이내 지원

## □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, 견본거래 허용

-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
-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에서 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
-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

-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를 제한할 수 있음
- 도매시장개설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·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 가능
  - 농수산물 견본품을 통한 신용거래로 물류비용 절감 예상

#### 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

- 음식점에서 조리·판매되는 돼지고기, 닭고기,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'08.12월말부터 확대 시행됨
- 돼지고기, 닭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
- 표시대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, 탕용,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주 음식이 대상임
  - 일반·휴게음식점 : 메뉴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(음식)
  - 집단급식소 : 주메뉴 개념이 아닌 돼지·닭고기가 들어간 음식
  - 중식·양식·한정식 : 코스요리(세트메뉴)에 기재된 음식
-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m<sup>2</sup>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
- 배추김치는 절임, 양념 혼합 후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임
  - 절임과정이 없는 겉절이와 양배추, 얼갈이배추, 봄동배추를 사용하여 담근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님

## □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

- 도축장의 경영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기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('08.12월)
  - '07년기준 전체 도축장 수는 106개소이며, 가동률은 46%임
-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('08.12월 발족)에 가입한 도축장경영자는 분담금을 매월 납부해야하며, 도축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폐업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협의회가 평가 후 보상금 지급
  - 분담금 : 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의 3/1000 이하 수준
-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도축장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보상금의 일부를 지원
- 폐업보상금은 도축장의 3년간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(재무제표 평가)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, 폐업보상금을 받은 도축장은 향후 10년간 영업금지
- 도축장구조조정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
## □ 도서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에 해상화물운송료 지원

- 농림어업인이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료 지원제도 도입 전망

## 4. 복지 · 기타

### 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-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의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및 건강보험 확대 적용 예정
- 소득수준별(건강보험료 기준) 본인부담 상한액
  - 하위 50% 계층 : 200만원
  - 50~80% 계층 : 300만원
  - 상위 20% 계층 : 400만원(현행 유지)
-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%에서 5%로 인하('09.7월 시행)
-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%에서 10%로 인하('09.7월 시행)
-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급여 실시('09.12월 시행)

### □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

-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'08년 대비 50% 이상 확대
  - 치매조기검진사업 보건소 : ('08년) 118개 → ('09년) 180개소 이상
-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사업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음(저소득층 우선)

## □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확대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('08.11월부터 시행)
  - 대도시 : 현행 112백만원 → 150백만원(38백만원 인상)
  - 중소도시 : 현행 95백만원 → 126백만원(31백만원 인상)
  - 농어촌 : 현행 90백만원 → 119백만원(29백만원 인상)
- ※ 부양의무자 : 1촌 직계혈족(부모·자녀) 및 그 배우자(며느리·사위)
  
-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,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,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 시행('08.11월부터 시행)
  -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 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

## □ 기초노령연금 확대

-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월소득을 노인단독 64만원, 노인부부 합산 108.8만원으로 확대
  - '08년에는 월소득이 노인단독 40만원,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음
  
- 연금액은 '09.3월까지의 단독가구 매월최고 84,000원, 부부가구 최고 134,160원이며,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,000원, 부부가구 최고 139,000원 지급 예정
  
- '09.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%(약 356만명)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

## □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

- '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50%경감
  - 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,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: 50%경감
-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인상
  - 현행 760천원~1,097천원 → 인상 후 814천원~1,140천원
-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(구매 및 대여) 연간 한도액 인상
  - 현행 150만원 → 인상 후 160만원
-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
  - 현행 약 2,700원 → 인상 후 3,284원(584원 인상)

## □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

- '09.3월부터 근로자 모집·채용, 퇴직·해고 등 고용의 전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며,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
- 연령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및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,000만원 이하 부과
- 모집·채용분야는 '09.4월, 그 밖의 경우는 '10.1월부터 시행

## □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완화

- '09.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 4인기준 월평균 796만원에서 391만원으로 인하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
- 월평균 소득 391만원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
  - 월평균소득 391만원 초과가구는 전액본인부담

## □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

- '09.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(월 5만원)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됨